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3. 2.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2년 3월 03일, 이병훈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2년 3월 0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399회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2. 8. 1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00회국회(정기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022. 12. 09) 상정, 심사

제401회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022. 12. 20) 상정, 심사, 의결
(수정가결)

제402회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3. 1. 31)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
토론 및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병훈 의원)

최근 자동으로 특정 명령을 반복 입력하여 짧은 시간 내에 대량의 정보를 송신할 수 있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연 관람권 등을 매입하고, 다른 사람에게 웃돈을 얹어 되파는 암표 매매가 성행하고 있음.

지난 2020년 12월 「공연법」 개정을 통하여 입장권·관람권 등의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의무가 규정되었으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를 금지하는 명시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 단속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안 제4조의2제2항 및 제43조제2항제1호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정연호)

1. 정보통신망을 통해 매입한 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및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안 제4조의2제2항 및 제43조제2항제1호 신설)

현행	개정안
○ 입장권등의 부정판매 방지 노력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의 입장권 · 관람권 또는 할인권 · 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 과태료(제2항: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신설) - 공연장 등록·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공연장운영자 - 안전관리비를 공연장운영 또는 공연비용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사용한 자 (이하 생략)	○ 입장권등의 부정판매 방지 노력 - (현행과 같음) - <u>정보통신망을 통해 매입한 입장권등 부정판매 금지</u> ○ 과태료 - 정보통신망을 통해 매입한 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를 위반한 자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최근 공연이나 프로스포츠 경기 등의 티켓을 매크로¹⁾ 프로그램을

1) 매크로(macro)란 자동으로 특정 명령을 반복 입력하여 짧은 시간 내에 대량의 정보를 송신할 수 있는 프로그램임.

이용하여 다량으로 예매한 후 과도한 웃돈을 받고 파는 암표거래가 성행하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온라인상에서의 공연장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규제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따라, 온라인 암표매매를 규제하기 위해 「공연법」 이외에 「경범죄처벌법」·「국민체육진흥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률안들이 국회에 제안²⁾되고 있음.

2020년 12월 현행법에 제4조의2를 신설하여 공연의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의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노력³⁾ 의무가 규정⁴⁾되었으나, 현행법상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를 금지하는 명시적 근거 및 제제수단이 없어서 실질적 단속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암표매매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라 단속하고 있으나, 현장에서의 암표매매 단속만 가능하고, 경기장이나 공연장 주변 등 오프라인

2) 제20대 국회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경범죄처벌법」 등 법률을 개정하여 온라인을 통한 암표 매매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려는 다수의 법률이 제안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으며, 제21대 국회에서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티켓을 구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에 대해서는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음.

3) 문화체육관광부는 법 개정 이전인 2019년 10월부터 온라인 암표 단속 강화를 위해 경찰청과 기관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하고, 실무협의체를 통해 온라인 암표·온라인 불법저작물 유통 및 음원사재기 등 각종 온라인 범죄 이슈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4) 「공연법」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판매 방지 노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의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22.]

에서 암표를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부과하고 있음.

인터넷, 소셜네트워크, 인터넷전자거래 등 통신수단의 활성화에 따라 오프라인에서 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암표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어, 과거 오프라인에서 주로 이루어졌던 암표거래가 사이버공간에서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행 「경범죄 처벌법」은 1983년에 신설된 조항으로 정보통신망이 보편화된 이후에도 개정되지 않아 실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암표매매는 규제가 어려운 실정임.⁵⁾

「경범죄 처벌법」상의 구성요건에는 현장에서의 암표매매만을 정하고 있어 정보통신망에서의 암표 매매는 처벌을 할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임에 따라 공연 입장권 등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입법조치는 그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5)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4.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옷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현재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온라인상 암표 매매에 대해서는 티켓 판매업무의 적정성 및 공정성을 방해한 것으로 보아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를 적용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음.(경찰청은 매크로를 이용한 암표 대량구매의 경우 그 행위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지만, 동 행위로 인해 과도한 트래픽을 발생시킴에 따라 예매사이트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아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판단)

[형법 제314조 제2항(업무방해)]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이에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량의 공연의 입장권·관람권 등을 사재기하여 암표 매매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려는 것으로, 공정한 시장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공연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음.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공연법」의 개정으로 온라인 암표매매를 규율하는 경우에도 암표거래가 공연산업에 한정된 것은 아니므로 이 법 적용 대상인 ‘공연’⁶⁾ 외에 프로스포츠 경기, 각종 문화행사(축제·시상식·팬미팅·영화시사회 등) 등의 암표매매 규제는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게 되고,

둘째, 부정판매는 주로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온라인상 IP 및 ID 추적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침해 가능성으로 판매자·구매자 개인정보 등 관련 정보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며,

셋째, 개정안은 부정판매 위반 시 제재수단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위반행위로 인한 법익침해 정도 및 의무위반의 경중에 비추어 과태료가 아닌 형벌로 처벌할 필요성이 검토되어야 하고,

넷째, 개정안과 같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암표거래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위한 행정제재에서는 정보통신망 가입자 조회, 해당 IP 확인,

6) 「공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연"이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 판매나 선전에 부수(附隨)한 공연은 제외한다.

통장거래 내역 확인 등에 관한 권한을 따로 규정할 필요성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할 것임.

참고로, 제21대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에 대한 정의 및 처벌 근거를 신설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5건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임.

구분	규제 대상	금지 행위
윤한홍 의원안	-단순반복적인 작업을 자동으로 프로그램화하여 처리하는 소프트웨어 등	-부당한 재산상 이득 취득 -타인의 정상적인 인터넷이용행위에 장애
정경희 의원안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명령을 수행하는 단순 반복 작업을 자동화하여 처리하는 프로그램	-공연 또는 운동경기의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을 구매하는 행위
김기현 의원안	-입력된 작업을 자동적으로 반복하여 수행하는 프로그램	-여론 형성을 왜곡하는 행위
이종배 의원안	-입력된 작업을 자동적으로 반복하여 수행하는 프로그램	-여론 형성을 왜곡하는 행위
양정숙 의원안	-단순반복적 작업을 자동화하여 처리하는 프로그램	- 부당한 재산상 이득 취득 - 타인의 정상적인 인터넷이용행위에 장애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판매 방지 노력) (생략) <신설>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주문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

현행	개정안
제43조(과태료) ① (생략)	<u>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 하여서는 아니 된다.</u>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3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신설>	② ----- ----- -----.
1. (생략)	1.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
1의2. (생략)	2. (현행 제1호와 같음)
2. ~ 4. (생략)	3. (현행 제1호의2와 같음)
③ ~ ⑤ (생략)	4. ~ 6. (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이용호)

정보통신망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량으로 사재기한 공연의 입장권·관람권 등의 부정판매 위반 시 제재수단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위반에 따른 제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과태료를 1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한편, 이 법 시행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시행일을 6개월에서 공포 후 1년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음.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의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

1.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3. 1. .

제 안 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개정안은 부정판매 위반 시 제재수단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위반행위로 인한 법익침해 정도 및 의무위반의 경중에 비추어 형벌로 처벌할 필요성이 고려되어 과태료를 형벌로 수정하고, 법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 확보를 위해 시행일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수정함(안 제 41조 및 부칙 등).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3조제1항제7호 중 “제41조제1호·제5호”를 “제41조제2호·제6호”로 한다.

제41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조의2제2항에 위반한 자

제42조 본문 중 “제41조제1호·제5호”를 “제41조제2호·제6호”로 한다.

안 제43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안 부칙 중 “6개월”을 “1년”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illegible]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신 설></u> 1. ~ 5. (생략)	제41조(벌칙) (현행과 같음)	제41조(벌칙) ----- ----- ----- ----- ----- -----.
제4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 또는 <u>제41조 제 1 호 · 제 5 호</u> 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제42조(양벌규정) (현행과 같음)	1. <u>제4조의2제2항에 위반한 자</u> 2. ~ 6. (현행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제42조(양벌규정) -- ----- ----- ----- ----- ----- ----- ----- <u>제41조 제2호 · 제6호</u> ---- ----- ----- ----- -----.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 ----- ----- -----.
제43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u><신 설></u> <u>1.</u> (생략) <u>1의2.</u> (생략) <u>2. ~ 4.</u> (생략)	제43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u>1.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u> <u>2.</u> (현행 제1호와 같음) <u>3.</u> (현행 제1호의2와 같음) <u>4. ~ 6.</u> (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	제43조(과태료)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 ----- ----- ----- -----. <u><삭 제></u> <u>2.</u> (개정안과 같음) <u>3.</u> (개정안과 같음) <u>4. ~ 6.</u> (개정안과 같음)

③ ~ ⑤ (생략)	지와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부칙 <u>이 법은 공포 후 6</u> <u>개월이 경과한 날</u> <u>부터 시행한다.</u>	③ ~ ⑤ (개정안과 같음) 부칙 -----<u>1</u> <u>년</u>----- -----.
-------------------	--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의 제목 중 “방지 노력”을 “금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제1항제7호 중 “제41조제1호·제5호”를 “제41조제2호·제6호”로 한다.

제41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

제42조 본문 중 “제41조제1호·제5호”를 “제41조제2호·제6호”로 한다.

제43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의2를 제3호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판매 방지 노력) (생략)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설>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 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행정처분) ① 특별자치시 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 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 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 하여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33조(행정처분) ① ----- ----- ----- -----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제40조제1호·제2호 또는 제41조제1호·제5호에 규정된 죄를 지어 형을 선고 받고 3개월 이내에 같은 위반 행위를 한 자	7. ----- -----제41조제2호·제6호 ----- ----- -----

② (생 략)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1. ~ 5. (생 략) 제4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 또는 제41조제1호·제5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41조(벌칙) ----- ----- ----- -----. 1.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 2. ~ 6. (현행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제42조(양벌규정) ----- ----- ----- -----제41조제2호 · 제6호----- ----- ----- -----. ----- ----- -----. 제43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u>1.</u> (생략) <u>1의2.</u> (생략) <u>2.</u> ~ <u>4.</u> (생략) ③ ~ ⑤ (생략)	<u>2.</u> (현행 제1호와 같음) <u>3.</u> (현행 제1호의2와 같음) <u>4.</u> ~ <u>6.</u> (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	--